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526
------------	-------

발의연월일 : 2025. 12. 23.

발의자 : 박수현 · 문진석 · 조계원

조인철 · 허영 · 김영배

정태호 · 김원이 · 이개호

김승원 · 이정문 · 양문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서 국립묘지로의 이장(移葬)과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의 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립묘지 상호 간의 이장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유족이 접근성, 거주지 변경 등의 사유로 안장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도 다른 지역 국립호국원으로 이장할 수 없어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 또한, 국립묘지 중 국립호국원의 경우 현재 6개 지역에 설치 · 운영되고 있으나, 국립묘지 간 이장이 불가능하여 신규 국립호국원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이장을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안장된 국립묘지 외의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족의 선택권과 편의를 보다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제7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제3호 신설 등).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유골(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제외한다)”을 “유골(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유족이 이장을 요청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안장된 국립묘지 외의 제5조에 따른 안장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유족의 이장 요청이 있는”을 “유족이 제7조제2항에 따라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이장을 요청하는”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7조제3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매장되거나 안치된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된 국립묘지 외의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p><u>이장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u></p> <p>제16조(안장비용) ① (생 략)</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유족이 부담한다.</p> <p>1. · 2. (생 략)</p> <p><u><신 설></u></p>	<p><u>제7조제2항에 따라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이장을 요청하는- -----.</u></p> <p>제16조(안장비용) ① (현행과 같 음)</p> <p>②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제7조제3항에 따라 국립묘지 에 매장되거나 안치된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된 국립 묘지 외의 국립묘지로 이장하 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u></p>
---	---